

2023년 1월 26일 제정

2026년 5월 19일 개정

보상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의 이사회 내에 설치된 보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조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임원의 보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,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,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조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- ⑤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수 또는 독립이사의 구성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

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독립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조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1월~2월에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7조(소집권자)

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

를 열 수 있다.

제 9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,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10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
- 임원에 대한 보상체계 및 정책(등기, 미등기)
- 임원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(등기, 미등기)
- 기타 임원의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 11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2조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(1주일)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3조(의사록작성 및 자료보존)

- ①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심의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4조(간사)

-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인사팀장이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의 전반을 담당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5조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

제4조, 제5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